국방 · 군사시설기준 화생방 방호시설 설계지침

제3장 화생방 방호시설

3.1 개요

3.1.1 화생방 방호설비 일반기준

15. 소방설비

나. 소화설비

소방 설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방호시설내 전자장비가 있는 지휘통제실, 컴퓨터실, 통신실, 사무실, 회의실, 생활관, 취사시설, 청정기계실, 오염기계실, 전기실, 복도 등에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2) 화생방 방호시설의 내부 배치 및 각실의 특성을 분석 검토하여 적절한 소방대책(이동 및 고정형소화기 및 무독성 소방기기 등)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화생방 방호시설의 청정기계실 및 오염기계실(전기실 포함) 등에는 인체에 무해한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등재된 청정소화약제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가스소방기기로는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등재된 청정소화약제 설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청정기계실 및 전기실을 포함한 오염기계실, 컴퓨터실, 서버실, 통신실 등은 무독성 가스소방기기를 고정형으로 설치하여 화재 발생시 자동소화가 가능하도록하고 상주 구역내에 청정소화약제 살포시 산소농도를 18%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설비(배출구 등)를 설치해야 한다. 기타 소화 설비의 기준에 대해서는 소방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표 2-43> 소방 설비 기준

구 분	설치 기준	비 고
사무실 및 회의실 내무시설 취사시설 청정/오염기계실, 복도 컴퓨터실 통신실 전기실(UPS 포함)	화재경보기, 연기감지기 이동 및 고정형 무독성 소화기	청정기계실,오염기계실(전기실 포함), 컴퓨터실,서버실, 통신실 등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등재된 청정소화약제설비 설치 상주 구역내에 청정소화약제 살포시 산소농도를 18%이상 유지할 수 있는 설비(배출구 등)를 설치